

PwC Korea

Customs Newsletter

튀르키예 반덤핑 조사 관련

2024년 5월

PwC 관세법인에서 '2024년 튀르키예 반덤핑 조사 관련 국제통상 동향' 및 PwC 관세법인 국제통상 전문 대응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튀르키예 무역부, 한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지난 4월, 튀르키예 무역부는 "수입 불공정 경쟁 방지에 대한 성명서"를 관보에 게재하면서, 한국산 열연평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한국산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현지 생산업체(Eregli Demir ve Çelik Fabrikaları T.A.Ş. 등)가 제출한 정보, 서류, 증거자료 등을 평가한 결과 생산량, 국내 판매액, 가동률, 고용, 생산성, 시장 점유율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튀르키예는 지난 2021년 1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18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 22년 7월부터 7~8.95%의 반덤핑 관세¹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래 조사 개시한 총 270여건의 수입규제 중 약 89%가 반덤핑 관세 조치일 정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번 조사 결과 역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년 4월 반덤핑 조사 내용

1. 조사대상 품목 및 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1년간 아래의 HS code로 수입된 품목

HS 코드 4 단위	조사품목 (상세)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폭이 600M 이상 열간압연한 것]	7208.51 (신규 추가) 7208.52 (신규 추가) 7208.90.80 (신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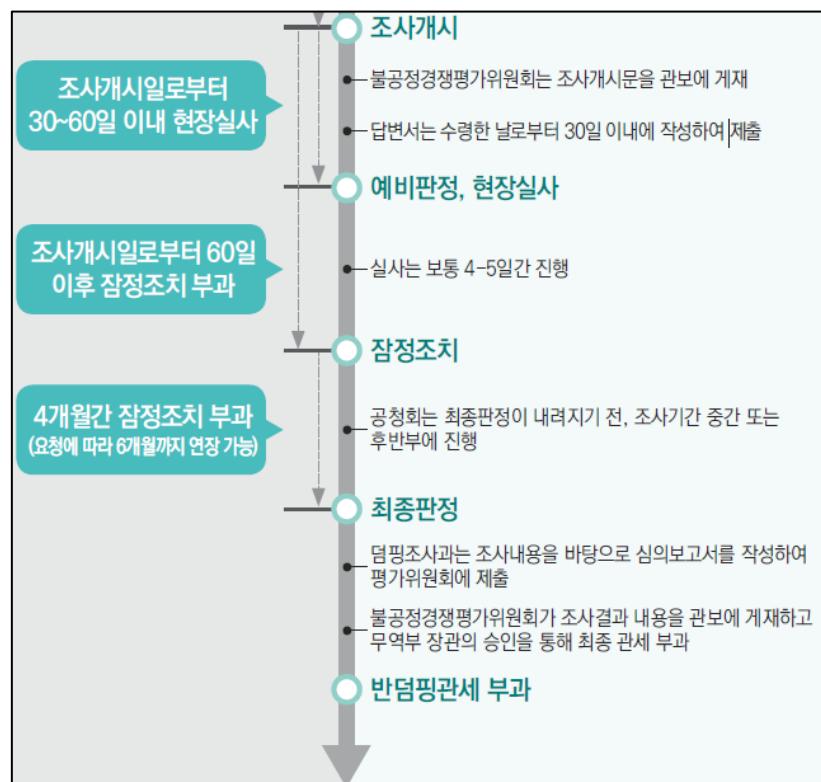
¹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Duty): 상품이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해당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수입국이 수출국 기업에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만큼 부과하는 관세로

<p>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p>	<p>7211.13.00.11.00 7211.13.00.19.00 7211.14.00.21.11 7211.14.00.21.12 7211.14.00.29.11 7211.14.00.29.12 7211.14.00.31.00 7211.14.00.39.00 7211.19.00.21.00 7211.19.00.29.00</p>
<p>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p>	<p>7225.40.40.00.00 (신규 추가) 7225.40.60.00.00 (신규 추가) 7225.99 (신규 추가)</p>

2. 조사 절차

튀르키예 무역부의 반덤핑 조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이 되는 한국기업들은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터키 무역부로부터 고지받거나, 관련 협회를 통해 수령받은 후 답변서를 수령일로부터 30 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 터키 무역부는 한국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실시를 통해 답변서의 완전성과 정확성 등을 심사하므로, 답변서 내용과 현장실사 시 열람되는 데이터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반덤핑 조사 절차>



출처: 외교부

PwC Turkey 와의 Global Network 를 통한 대응전략

PwC 관세법인은 반덤핑 조사를 포함한 무역규제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분야 및 국가별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국제통상 전문 대응팀 (변호사, 관세사로 구성)을 구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PwC Turkey 와의 글로벌 협업관계를 통해 현지 세관당국과의 긴밀하고 원활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PwC Turkey 철강 반덤핑 대응 서비스 소개>

터키 세관의 반덤핑관세의 적용

✓ 터키 세관당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지 제조업체가 덤프링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거나 세관당국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덤프링조사를 개시하고, 조사한 결과 피해가 입증되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 세관당국의 검토를 거쳐, 관세 철폐 · 변경 · 현행 유지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 ✓ 한국산 철강제품 중 하기의 HS코드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7208.51, 7208.52, 7225.99, 7208.90.80, 7211.13.00.11, 7211.13.00.19 7211.14.00.21.11, 7211.14.00.21.12, 7211.14.00.29.11, 7211.14.00.29.12, 7211.14.00.31, 7211.14.00.39, 7211.19.00.21, 7211.19.00.29, 7225.40.40, 7225.40.60.
- ✓ 중국산 철강제품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이며, 최대 22.5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덤핑조사

- ✓ 관련 법령에 따르면, 2024년 4월 2일에 반덤핑조사개시문이 게재되었습니다.
- ✓ 반덤핑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응방법은?

- ✓ 터키 세관당국은 반덤핑조사개시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를 실시하며, 해외수출업체 및 터키 내 수입업체 등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수출업체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판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반면,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를 면제받거나 (dumping이 없다고 판단 시), 다른 업체 대비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wC의 역할

- ✓ 터키에 수출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현지 세관당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따라서, 상기 제품을 터키에 수출하는 업체는 반덤핑조사에 협조하여 예상되는 반덤핑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받고 이를 통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우리 PwC는 반덤핑관세 인하 ·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덤핑조사와 관련하여 관세 ·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wc

이에 상기 무역규제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Young-Mo Lee
Partner
+82-2-3781-3140
youngmo.lee@pwc.com

Jung-Wook Seo
Managing Director
+82-2-709-8351
jungwook.seo@pwc.com

Jung-Mo Kang
Director
+82-2-3781-1768
jungmo.kang@pwc.com

Eulyeol-Mun
Managing Director
+82-2-3781-2563
eulyeol.mun@pwc.com

Jung-Hwan Paek
Director
+82-2-709-4089
junghwan.paek@pwc.com

PwC 관세법인 뉴스레터는 PwC 관세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PwC 관세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PwC 관세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